

제 799 호
1980. 9.13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 종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460 호: 서울특별시골포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3

제 1461 호: 서울특별시유도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4

◎ 고 시

제 29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승인..... 5

제 313 호: 도시계획사업(청사부지확보및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 5

제 314 호: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8

제 31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9

제 31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9

제 3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0

제 318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구(종치지구) 정정지적승인..... 12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19 호 :	개개발구역지정및재개발사업계획결정에따른지적승인.....	13
제 321 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고시.....	18
제 32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8
제 32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기간연장)	19

◎ 공 고

제 278 호 :	XS 표시정지처분공고	19
제 280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준공.....	20
제 281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20
제 283 호 :	열사용기자재제조업허가취소.....	21
제 284 호 :	서울역-서대문계 2 구역 1 획지재개발사업완료공고.....	21
제 71 호 (용산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2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골프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1980년 9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460 호

서울특별시골프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골프연습장에 대한 재
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
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골프연습
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균일과세대상)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은
유기장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골프연습장
(실내에서 일체의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와
실외에서 골프를 위한 2 개이상의
홀과 라운드코스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에서 같다) 용 토지로 한다.

제 3 조 (경감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은 법 제 188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 목의 규정에 불구
하코 그 가액의 1,000 분의 10
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처리외 위임)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
한 사무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만
다.

제 5 조 (경감신청) ①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조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균
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
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경감처리 할 수 있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도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1980년 9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461호

서울특별시유도도로통행
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유도도로통행요금징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을 "서울
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방법 및 통행확인) ①

통행요금은 제표소에 설치된 현금
징수함에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투입케하여 징수하고 기타 요금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유도도로 이용자가 통행확인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통행확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차체외부에 명확한 고
정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
행요금을 면제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
법원장 및 국민이 승차한 차량
과 그 경호용 차량
2. 경찰 또는 군경호차량에 의하
여 유도받고 있는 외교사절 및
국제행사참가자가 승차한 차량과
그 경호차량
3. 군작전용차량
4. 순찰용차량
5. 채신관에서 우편 및 공중전
기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6. 구급, 구조 또는 소방등 긴급
출동하는 차량(수방용 포함)
7. 서울특별시소속 청소차량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수권은
1980년 9월 30일한 사용할 수
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9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
촌동 70-1 외 3 필지상에 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
하고 동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을 나
옴과 같이 고시한다.

1980.8.18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3	1	6.0 M	120.0 M	둔촌동 70-3	둔촌동 73	아파트단 지내구간 제거
해지	소로	3	1	6.0 M	120.0 M	'	'	'

*별첨 계획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313 호

도시계획사업 (청사부지확보
및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 (77.
6.13), 제 327 호 (78.7.3) 및
제 406 호 (78.8.) 에 의하여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사업 (청사부지확보 및 도로확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9.8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26의15의</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용의 청사부지 및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청사부지 확장: 1,381.3 평 도로확장: $B = 22^M \rightarrow 30 \sim 32^M$ $L = 70^M$ $B = 6^M \rightarrow 8^M$ $L = 140^M$ 하수도: $D = 600\%$ $L = 85^M$ $A = 6.25a$ 기타 용벽담장</p> <p>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용산구</p>	<p>청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인가일로부터 100 일</p> <p>6. 인가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p> <p>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면적의의 권리명세: 다음</p> <p>8.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다음</p> <p>* 인가조건: 별첨 계약 설계도서 (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선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	--

토 지 조 서

연번	동 명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수 용 전			수 용			등급	수 소		성 명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1	원효로1가	26-17	43	대	26-17	43		원효로1가26-17	정대규		
2	"	26-34	29.4	"	26-34	29.4		" 26-34	조동석		
3	"	26-35	61.2	"	26-35	61.2		" 26-35	이병설		
4	"	26-39	63.8	"	26-39	63.8		" 26-16	신현우		
5	"	26-31	91.6	"	26-31	91.6		" 26-31	박영규		
6	"	26-16	78.3	"	26-16	78.3		" 26-16	박순희		
7	"	26-42	123.3	"	26-42	123.3		" 26-42	조석경		
8	"	26-15	145.5	"	26-15	145.5		" 26-15	오준억		
9	"	24-20	31.6	"	24-20	31.6		" 24-20	김창순		
	계	9 필지	667.7			667.7					

연번	동명	토 지						소유자		비고	
		수용전			수용			등급	주소		성명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등급				
10	원효로1가	25-2	1,013.1	대	25-2	1,013.1			국	내무부	
11	"	25-3	424.8	"	25-3	424.8			"	"	
12	"	25-6	76.7	"	25-6	76.7			"	"	
13	"	26-1	6.6	"	26-1	6.6			"	내무부	
14	"	26-3	152.1	"	26-3	152.1			"	"	
15	"	26-4	131.7	"	26-4	131.7			"	"	
16	"	26-5	72.7	"	26-5	72.7			"	"	
17	"	26-6	89.2	"	26-6	89.2			"	"	
18	"	26-7	122.3	"	26-7	122.3			"	"	
19	"	26-8	92.6	"	26-8	92.6			"	"	
20	"	26-9	56.2	도	26-9	56.2			"	"	
21	"	26-10	1,378.5	대	26-10	1,378.5			"	"	
22	"	26-11	6.6	"	26-11	6.6			"	"	
23	"	26-12	2.3	"	26-12	2.3			"	"	
24	"	26-13	102.5	"	26-13	102.5			"	"	
25	"	26-14	148.8	"	26-14	148.8			"	"	
26	"	26-30	6.6	"	26-30	6.6			"	"	
27	"	26-45	9.6	"	26-45	9.6			"	시도착구	
28	"	26-46	12.2	"	26-46	12.2			"	"	
계		19필지	3,905.1	"		3,905.1					
29	"	25	5,360	"	25	5,360	대		서울특별시		
30	"	24-25	17	"	24-25	17	"		"		
계		2필지	5,377			5,377					

건 설 조 서

연번	원 건 설					수용설			소유자	
	동명	지번	층별	구조	건평	층별	구조	건평	주소	성명
1	원효로1가	26-17	1층	목조와습	11.04	1층	목조와습	11.04	원효로1가26-17	정대규
2	"	26-34	1층	"	9.31	1층	"	9.31	" 26-34	조동석
3	"	26-35	1층	"	9	1층	"	9	" 26-35	이병실
4	"	26-39	1층	목조모단	5.28	1층	목조모단	5.28	" 26	김운구
5	"	"	1층	목조와습	5.27	1층	목조와습	5.27	" 26-16	유재근
6	"	26-31	1층	연스와조	16.88	1층	연스와조	16.88	" 26-31	박영규
"	"	"	2층	"	15.41	2층	"	15.41	"	"

연번	원 건물					수용 건물			소유자	
	동명	지번	층별	구조	진평	층별	구조	진평	주소	성명
7	원효로가	26-16	1층	목조도칸	3.7	1층	목조도칸	3.7	원효로1가26-16	박순희
			1층	목조외집	12	1층	목조외집	12		
8	"	26-42	1층	"	16.5	1층	"	16.5	" 26-42	조석경
9	"	26-15	1층	"	17.45	1층	"	17.45	" 26-15	오준억
			1층	"	13.55	1층	"	13.55		
10	"	24-20	1층	"	8.22	1층	"	8.22	" 24-20	김창순
11	"	25	지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45.57	지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45.57	서울특별시	
			1층	"	357.19	1층	"	357.19		
			2층	"	319.43	2층	"	319.43		
			3층	"	"	3층	"	"		
			4층	"	"	4층	"	"		
			5층	"	"	5층	"	"		
12	"	25	우탑	"	55.17	우탑	"	55.17	서울특별시	
			1층	조적조스라브	7.86	1층	조적조스라브	7.86		
13	"	"	1층	연외외집	60	1층	연외외집	60	"	
			2층	"	60	2층	"	6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4 호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7 호 (80. 6.26) 로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정류장)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9.9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시내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강남구서초동산 156-30	11,635.5 (495평)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315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3 호 (80. 6. 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79. 12. 10) 호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p>	<p>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9. 9 서울특별시장</p>
---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4m	31m	월계동산 120	월계동산 120	
"	"	3	6m	38m	" 507-8	" 509-4	
"	"	2	8m	63m	" 857-14	" 산 120	
"	"	2	8m	37m	" 857-14	" 508-13	
"	"	2	8m	38m	" 508-13	" 508-17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316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p> <p>1. 건설부 고시 제 524 호 (72. 12. 8) 로 지적승인된 판내 4.19 공원입구-아카데미하우스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의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 10) 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p>	<p>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9. 9 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수유동 567-75외 33필지</p> <p>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p> <p>· 사업의명칭 : 4.19 공원입구-아카데미하우스간 도로 (수유동 567-19) (수유산 76) 개설공사</p> <p>다. 사업의규모 : B = 15m L = 1,100m</p>
---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도봉구 청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연월일

1) 착수에정일 : 인가일로 부터

2) 준공예정일 : 80.11.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인의 주소, 성명(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80.3.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고 제 16 호(80.4.8) 및 공고 제 18 호(80.4.16)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공람공고된 도시계획 시설(학교)용지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복사실, 서울특별시 교육위

원회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9.10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 천동 458-84 의 13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신봉국민학교

다. 사업규모및면적 : 교사 31 필 변소 4 등 9.166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16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 : 시행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 : 198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 권이외의 권리명세 : 다 음

사.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다 음

아. 시행허가설계도서 : 별첨(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악구 봉천동	458 - 84	건	235㎡	없	음
	- 85	·	590	없	음
	- 89	·	208	가 등	기
	- 3	·	529	없	음
	- 5	·	2,043	·	음
	- 4	·	256	없	음
	458	·	713	가 등	기
	458 - 86	·	175	가	음
	- 88	·	447	가 등	·
	- 87	·	629중 390	가	음
	- 90	·	1,809중 1,500	가 등	기
	887 - 1	대	1,234중 850	없	음
	- 2	·	1,114중 830	없	음
	975 - 5	도 토	400	없	음
계	14 필		9,166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악구 봉천동	458-84	건	235㎡	관악구봉천동458-6	유영래	없	음	
	-85	·	590	"	"	없	음	
	-89	·	208	충북육천군청산면 하서리	조만식	용산구용문동 38-101		조천성
	-3	·	529	용산구용문동 38-101	조천성	없	음	
	-5	·	2,043	관악구봉천동 453-6	유영래	없	음	
	-4	·	256	"	"	없	음	
	458	·	713	충북육천군청산면 하서리	조만식	용산구용문동 38-101		조천성
	458-86	·	175	관악구봉천동 458-6	유영래	없	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58-80	전	447	충북육천군청산면하서리	조만석	용산구용문동 38-101	조천성
	- 87	"	620중 390	관악구봉천동 450-6	유영래		
	- 90	"	1,009중	충북육천군청산면하서리	조만석	용산구용문동 38-101	
			1,500				
	087-1	대	1,234중	용산구용문동 30-101	조천성	없음	
			850				
	- 2	"	1,114중			없음	
			830				
	975-5	도로	400	서울특별시		없음	
계	14필		9,14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8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구 (풍치지구) 정정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235 호 ('77. 12.3) 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7 호 ('79. 11. 30) 로 지적승인된 풍치지구중 일부가 지형도의 현황 불일치 및 도면 신

도에 따른 오차가 발견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 10) 에 의거 정정하고 지적승인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9.11

서울특별시 장

○ 풍치지구 정정 지적승인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명창지구	종로구 명창, 부암, 구기, 홍제동동 57 필지	1,941,000	없음	1,941,000	정정내용 별첨도면 표시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319 호

재개발구역지정및재개발사업
계획결정내역공시

1.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7.6.29) 및 제 285 호 (78.9.26) 동고시 380 호 (78.11.30) 425 호 (78.12.29) 253 호 (79.7.9) 345 호 (79.9.21) 428 호 (79.11.22) 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울지로 2 가, 양동, 소공제 4, 명동 2 가, 공평, 신문로제 2, 봉래동 1 가, 남대문로 5 가, 동작동, 남대문, 서소문, 새문상가구역, 마포로, 청진, 회현, 명동구역과 동고시 제 288 호 (78.9.26) 429 호 (78.12.29) 254 호 (79.7.9) 71 호 (80.3.7) 로 구역변경된 울지로 1 가, 서울역-서대문, 최선, 도림구역, 신공로구역 및

건설부고시 제 257 호 (78.9.5) 380 호 (78.11.30) 347 호 (79.9.24) 425 호 (79.12.29) 429 호 (78.12.29) 533 호 (79.12.28) 147 호 (80.5.10) 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울지로 2 가구역, 양동, 동작동, 서소문, 서울역-서대문, 울지로 1 가, 공평, 소공제 4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 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아래 표제인역제 보이게 한다. (관계 도서 생략)

1980.9.12

서울특별시강

가.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역명	면적	위치	비고
울지로 2 가 구역	86,681 ㎡	중구수하동 10 번지일대	건고시 123 호 (77.6.29)
양동구역	91,924	중구양동 9.10 2-61 일대	건고시 285 호 (78.9.26)
소공제 4 구역	18,783	중구소공동 30.51,74 일대	"
명동 2 가 구역	95,850	중구명동 2 가, 충무로 1,2 가 저동각일부	"
공평구역	99,920	종로구공평동 5,6 번지 및 인사동 194 197 번지일대	"
신문로제 2 구역	72,251	종로구신문로 1,2 가일대	"

구역명	면적	위 치	비 고
봉래동 1 가 구역	95,187	중구봉래동 58,68,88,63 일대	전고시 285 호 (78.9.26)
신문로구역	4,970	중로구세종로 1 가 151 일대	전고시 71 호 (80.3.7)
회현구역	49,513	중구회현동 1,2 가 일부	전고사 428 호 (79.11.22)
청진구역 마포로구역	57,124 233,254	중로구청진동및종로 1 가공평동일부 마포로주변일대	전고시 345 호 (79.9.21)
명동구역	88,772	중구명동 1 가주변일대	전고시 428 호 (79.11.22)
남대문로 5 가구역	50,248	중구남대문로 5 가 12,17,19,20,21 번 지일대	전고시 285 호 (78.9.26)
동자동구역	45,157	용산구동자동 14,35 일대	전고시 380 호 (78.11.30)
남대문구역	95,986	중구남창동, 회현동 1 가, 충무로 1 가, 남대문로 3 가일대	전고시 425 호 (78.12.29)
서소문구역	94,304	중구서소문동, 태평로 2 가, 남대문로 4 가일대	전고시 425 호 (78.12.29)
세운상가구역	153,390	중로구장사동, 예지동, 산림동, 주교동 및중구율지로 4 가, 인현동 2 가, 예판동 충무로 4 가일부구역	전고시 253 호 (79.7.9)
율지로 1 가 구역	18,230	중구율지로 1 가 50,63,85 일대	전고시 382 호 (78.11.30)
서울역 - 서 대문구역	85,438	중구순화동, 봉래동 1, 2 가일대	전고시 429 호 (78.12.29)
도림구역	73,603	중로구도림동, 내수동 당주동일부	전고시 254 호 (79.7.9)
적선구역	23,510	중로구적선동, 내자동일부	전고시 254 호 (79.7.9)

나. 재개발사업계획 (공공시설) 신청도서					
1) 도로조서					
노선명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중로 2류 195 호	15	90	중구수하동 20번지일대	중구수하동 106번지일대	을지로 2가구역
" 196 호	15	192	" 을지로 1가 45-2 "	" " 1-1 "	
중로 3류 140 호	12	100	" 삼각동 59-1번지일대	" " 103-3 "	
" 141 호	12	140	" 수하동 12-2 "	" " 106 "	
" 142 호	12	75	" " 102-2 "	" 을지로 2가 8 "	
" 143 호	12	180	" 을지로 2가 31 "	" " 94 "	
" 144 호	12	130	" 장교동 74 "	" 장교동 72-2 "	
" 145 호	12	130	" 삼각동 7-2 "	" 삼각동 103-2 "	
소로 2류 1호	8	50	" 장교동 45-10 "	" 장교동 4 "	
" 2호	8	80	" " 36-9 "	" " 5 "	
중로 1류 212 호	20	140	" 양동 310 "	" 양동 87 "	양동구역
" 211 호	20	187	" " 373-1 "	" " 34 "	
소로 2류 1호	8	50	" " 552 "	" " 552 "	
" 2호	8	70	" " "	" " "	
" 3호	8	70	" " 283번지일대	" " 285번지일대	
중로 2류 201 호	10-40	370	" " 101-2 "	" " 422 "	
소로 2류 4호	9	135	" " 328 "	" " 507 "	
세로	4	130	" " 282 "	" " 72-1 "	
광로 9호	45	360	용산구동자동 2-6번지일대	용산구동자동 14-112 "	
중로 1류 210 호	20	140	" " 35-182 "	" " 14-11 "	용산구동자동
중로 2류 197 호	15	362	" " 2-1 "	" " 5-82 "	
" 198 호	15	106	" " 17-4 "	" " 14-85 "	
" 199 호	15	125	" " 37-1 "	" " 14-126 "	
중로 3류 147 호	12	82	" " 17-7 "	" " 13-3 "	
" 148 호	12	90	" " 37-66 "	" " 37-2 "	
소로 1류 1호	10	74	" " 2-6 "	" " 2-1 "	
중로 3류 122 호	12	83	중구을지로 1가 53 "	중구을지로 1가 39-2 "	을지로 가구역
" 123 호	12	30	" " 83 "	" " 74-2 "	

노선명	복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중로 3류 124 호	12 ^m	60 ^m	중구울지로 1가 98번지	중구울지로 1가 95-1번지	울지목 1가구역
소로 1류 2 호	10	70	" 외주로 1가 30 "	" 외주로 1가 44 "	서울역- 서대문구역
" 2류 5 호	8	63	" 7-3 번지	" " 25-13 "	"
중로 2류 4 호	15	57	" 44-2 "	" 순화동 1-74 번지	"
소로 2류 11 호	8	62	중구순화동 1-101 "	" " 1-89 "	"
" 1류 3 호	10	186	" " 1-98 "	" " " "	"
중로 3류 113 호	12	155	" 미근동 215 "	" 미근동 240 "	"
" 114 "	12	60	" " 303 "	" " " "	"
광로 4 호	45	50	" 순화동 7-3 "	" 외주로 1가 194-4번지	"
중로 3류 7 호	12	330	" " 7-32 "	" 순화동 33-301 "	"
소로 1류 8 호	10	50	" " 99 "	" " 106-2 "	"
" 9 "	10	90	" " 32-2 "	" " 85 "	"
대로 3류	25	215	" " 37-2 "	" 봉래동 1가 5-3 "	"
소로 2류 1 호	8	40	" 남창동 46-8 "	" 남창동 46-39 "	남대문구역
" 1류 2 "	10	100	" " 9-1 "	" 회현동 1가 194-1 "	"
소로 3 호	10	45	" 남대문로 4가 18-9 "	" 남대문로 4가 18-6 "	"
소로 2류 4 호	8	100	" 남창동 51-2 "	" 남창동 51-5 "	"
중로 2류 189 호	15-20	200	" " 64-1 "	" " 25-2 "	"
" 1류 202 "	20	180	" 회현동 1가 194-3 "	" 회현동 1가 200-1 "	"
" 2류 190 "	15	355	" 남창동 51-1 "	" " " "	"
" 1류 201 "	20	220	" 태평로 2가 277-2 "	" 서소문동 58-13 "	서소문구역
" 2류 192 "	15	240	" 남대문로 4가 47-2 "	" " 120-33 "	"
대로 1류 4 호	35	430	" 태평로 2가 340-6 "	" " " "	"
중로 3류 120 호	12	75	" " 277-2 "	" 태평로 2가 232-1 "	"
" 211 "	12-26	250	" " 120-2 "	" 서소문동 74-2 "	"
소로 2류 1 호	8	132	" 서소문동 90-4 "	" " 75-2 "	"
중로 1류 175 호	20	391	종로구공평동 10-2 "	종로구낙원동 284-22번지	공평구역
" 215 "	20	170	" 인사동 25-1 "	" 인사동 7 "	"
중로 2류 208 "	15	34	" " 15 "	" " 169 "	"
" 209 "	15	145	" " 193-6 "	" " 23-1 "	"

노선명	복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중로 2류 210 호	15 [㎡]	362 [㎡]	중로구공평동 66 번지	중로구인사동 72 번지	공평구역
" 211 "	15	70	" 인사동 231 "	" 중로2가10 "	"
중로 3류 150 "	12	148	" " 247 "	" 인사동 219 "	"
소로 2류 1호	8	72	" " 201 "	" " 203 "	"
" 8 "	3	120	중구소공동 24 번지	중구소공동 50 번지	소공구역

2) 공원조서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양동공원	양동 347 번지 일대	2,934 [㎡]	양동구역
동자동공원	동자동 18-32 "	1,448	동자동구역
공평제 1 공원	인사동 210 "	4,595	공평구역
" 제 2 "	" 172 "	1,058	"
외주로제 1 공원	순화동 63 "	1,170	서울역-서대문구역
" 제 2 "	외주로 1가 44 "	1,138.5	"
" 제 3 "	순화동 152 "	1,134	"
남대문공원	남창동 20-1 "	327	남대문구역

3) 주차장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을지로 2가제 1 주차장	중구수하동 65 일대	1,560 [㎡]	을지로 2가구역
" 제 2 "	" 삼각동 109 "	664	"
" 제 3 "	" " 101 "	645	"
" 제 4 "	" 장교동 68-1 "	1,226	"
	" 서소문동 120-9,10 "	1,421	서소문구역
소공제 1 주차장	" 소공동 76 일대	1,520.7	소공제 4 구역
" " 2 "	" " 40 "	1,259.5	"
외주로제 1 주차장	" 순화동 79 "	3,236	서울역-서대문구역
" 제 2 "	" 외주로 1가 165-3 "	534	"

◎서울특별시고시제 321 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고시

1. 도시재개발사업 무교, 다동, 서린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3
 조제1항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80. 9. 13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 지정내역

구역명	면적	인가신청기간	비고
무교구역	8,364㎡	80.9.1-82.12.31	7,8,9,10,11지구해당
다동구역	50,500	80.9.1-82.12.31	
서린구역	33,000	80.9.1-82.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32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제 7 호 (75.1.9) 로 시
 설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부지조성)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및 동시행령
 제 2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1980. 9.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은평구대조동 90 의 20
 의 2 필지

2. 사업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학
 교부지조성)동명학원

3. 사업외규모및면적: 1,100 평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학교법인
 동명학원 이사장 양 상 경

5.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사업계획실시허가즉시
 나.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1년간

6. 위치및계획명면도: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 두면은 은평구청도시정비과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3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0 호 (78.12.15) 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9. 15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독산동 668-35
- 나.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 다. 면적 : 2,514 평
- 라. 사업시행자 : 상신교통(주) 한귀환
- 마. 사업기간 : 당초 - 78.12.15-80. 8.30
변경 - 78.12.15-80.12.20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8 호

KS 표시정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정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0. 9. .

서울특별시 장

허가번호 1843

- 1) 허가일자 79.11.7
- 2) 제조업체명 실진정공시
- 3) 대표기 강태환
- 4) 소재지 강서구등촌동 304-3
- 5) 품 목 주철 10kg/㎡
플랜지형게이트밸브
50φ 200φ
- 6) 규격번호 KS B 2353
- 7) 처분기간 3개월
- 8) 처분사유 KS규격미달

○ 서울특별시공고제 280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준공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2 호 (79. 6.27) 로 시행허가 고시된 도봉구 우이동 8-10호의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을 도시계획법 제 57조 2항 및 제 8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9. 11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동 8-10
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삼화교통주식회사 시내버스주차장
3. 사업의규모및면적: 1,924 (583평)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종로구관철동45-1 삼화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영환
5. 사업의착수: 79.6.27
준공일:
6. 공사완료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81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1 호 (80. 5.9) 호와 시행허가 및 동 고시 제 297 (80.8.18) 호로 변경 시행허가된 동대문구 면목동 57-8번지의 4필지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와 동법 85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면목동 57-8번지의 4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아진교통주식회사 시내버스정류장
-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3,145 평방미터 (951.5평) 에 대한 2,681 평방미터 (811평) 의 포장과 부대시설의 설치

<p>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도봉구 도봉동412 아진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구</p> <p>마. 사업외곽수 및 준공일</p> <p>1) 착수년월일: 80.5.29</p> <p>2) 준공년월일: 80.9.6</p> <p>바. 공사완료도면: 생략</p>	<p>○ 서울특별시공고제 283 호</p> <p>열사용기자재제조업허가취소</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3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시행 령 규칙 제 17 조 규정에 의거 이통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9. 1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업체명, 대표자사업소재지	기자재명	취소사유	위반법조
청구공업(주) 이재현 서울용산구문배동 7-6 호	수명형노후 터리식버너	폐지신고불이행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 22 조 1 항 위반

<p>○ 서울특별시공고제 284 호</p> <p>서울역-서대문제 2 구역 1 획지 재개발사업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 호 (78. 7. 3) 토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 된 서울역-서대문제 2 구역 1 획지 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 법 제 48 조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9. 1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가. 사업시행지: 중구외주로 1 가 1 번지일대</p>	<p>나. 사업명칭: 서울역-서대문제 2 구역 1 획지 재개발사업</p> <p>다. 사업시행인가년월일 및 번호: 1978. 7. 3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 호)</p> <p>라. 시행자주소, 성명</p> <p>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외주로 1 가 1 번지</p> <p>2) 성명: 남광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세</p> <p>마. 준공면적</p> <p>1) 토지 대지: 3,850.0㎡ 도로(공공용지): 1,736.0㎡ 계 5,586.0㎡</p> <p>2) 건물 연면적 28,716.458㎡</p> <p>바. 준공내역: 준공내역조서 및 확정 추량성과도 참조 (서울특별시 재개발 1 과 비치)</p>
--	--

○ 용산구 공고제 71 호

공인개각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

1980년 9월 25일 09:00부터 사용함에 따라 공인규정 제 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우암동장의 6개 동장직인 및 제인인명

1980년 9월 15일
용 산 구 공 고 장

공 인 의 인 명

인 명		
공인명	우암동장직인및제인	용산 2가동장직인및제인
인 명		
공인명	원효로제 1 동장직인및제인	효창동장직인및제인
인 명		
공인명	한강로제 3 동장직인및제인	이촌제 1 동장직인및제인